

第54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7月8日(月) 14時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의件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의件(城北區廳長 提出) 1面

(14時05分 開議)

○委員長 徐化錫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성북구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견을 상정하기 전에 '96년 7월 8일 금일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님 두 분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보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두 분과 전문위원 한 분을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 봉직하다가 재무과장에 전보되신 원재웅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위생과 과장으로 봉직하다가 부과과장에 전보되신 고용은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석관2동 동장으로 봉직하다가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전보되신 김진영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년 4개월동안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금일 전보되신 송련 전문위원께서는 구청 교통행정과 과장에 전보되었고 또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까지 명을 받았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專門委員 宋 鍊 3년 4개월동안 행정위원회를 담당하면서 위원님들의 보필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오히려 제가 폐만 끼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구청에 가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4時08分)

○委員長 徐化錫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견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길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張壽吉 재무국장 장수길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송 련 전문위원의 마지막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宋 鍊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결용위원님.

○安傑瑤委員 안결용위원입니다. 장수길 재무국장님 제안설명과 송 련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첫째 관련법규에 따라 성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결

된다고 봤을 때 개략적으로 구세의 몇%가 감면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성북관 내에 이런 감면 대상 물건이 현재 몇 건이나 지금 된다고 추산하시는 건지 지금 40m² 건물의 재산세, 현재까지의 부과실적은 부과금액은 우리 성북구 관내에 얼마나 재산세가 부가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들도 하죠.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바로.

(「위원장」하는 이 있음)

○尹弘老委員 윤홍노위원입니다. 조례10조1항 개정코자 하는 내용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현재 부대시설이 우리 성북구 현황이 어떠한 현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부대시설 중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시설 이런 현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박시준위원님.

○朴時俊委員 주요골자 제10조에 보게 되면 전용면적 60m²인 5세대 이상 그러면 5×6=30 이게 300m²이면 100평입니다. 100평. 그러면 바닥면적이 한 60평 정도되는데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는 그 내용에 60m² 5세대도 복리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지하도 대부분 다 각자로 소유권 동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분으로 5세대 이상의 여러 채의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60m²인 5세대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부대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세대까지는. 그러니까 이것을 20평인데 이런 5세대까지의 연립주택에 대해서 복리시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세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財務局長 張壽吉 지금부터 안결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현재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10조1항과 10조2항 그리고 16조 이렇게 세가지 조문이 변경이 되는데, 10조1항과 10조2항은 지금까지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데 그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세분화해서 구분한 내용이 되었고, 제16조는 금년도 '95년도 12월달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 신설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조1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개정 전에는 60m²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중에서 그 부대 복리시설이라고 일괄로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대복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범위를 포함하는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조2항에는 40m²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 이렇게 지금까지 조항이 되어 있었는데,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부동산 자체가 토지 및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건축물일 때 그것이 어떠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그리고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전이나 개정 후에 동일하게 과세대상일 뿐 그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으로서 현재 구세에 어떠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용 60m² 임대용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과세한 것이 몇 건에 몇 %인가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40m² 이상의 부과 실적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40m² 이상의 부과 실적은 약 3/1,000을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현재 성북구에는 40m²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감면조례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전부다 포함을 일단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홍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대복

리시설중에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중에서 공공시설이 과연 복리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이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현재 부대시설 그러면 어떤 주거용 건축물 이외에 주차장이라든지 관리사무소 담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부대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시설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구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이라든지 목욕탕, 그다음에 입주자들이 회의를 하기 위한 집회 장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복리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준해서 시설 구분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임대용공동주택이 없다보니까 공공시설을 구분하는데 어떠한 쟁점이었던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박시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0㎡이하인 임대용공동주택의 범위중에서 5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질문하셨는데, 현재 5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해당되니까 그 이하는 현재 저희들 성북구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시설중에서 복지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은 현재 건물이 임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최동환위원님.

○崔東煥委員 문맥의 뜻이 이해가 안되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조2항에서 현행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1항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에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고 단서를 달았는데, 이 단서를 개정안에서는 빼버렸는데 뻐 것과 안뻐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張壽吉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영구임대주택이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용주택이나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50년 이상 임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이나 다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崔東煥委員 규정에서 매각이 제한된 기간이라는 것이 50년을 말하는 그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10년도 있고 5년도 있고 또 세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張壽吉 현재 50년도 있고 그다음에 10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최하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崔東煥委員 그것을 통털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張壽吉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0년 이상만 영구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崔東煥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安傑瑤委員 현재까지는 이런 구세감면 대상 물건이 없어서 부과실적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 성북구 관내에 이런 구세감면 해당되는 이런 건물이 얼마나 어떻게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관련법규에 조례개정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것이고 생각하는 겁니까?

○財務局長 張壽吉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의 주택을 신축하는 재개발사업중인 곳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규정을 정할 때 지방세법에 의하면 구에서 정하는 감면조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들이 구청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감면조례에 대한 사항들이 전국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사전에 전부 같이 동일한 사항으로 승인을 받는 내용으로서 조정을 했고 또 중복감면의 배제는 작년도 '95년 12월 6일날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유진무위원님.

○俞鎭武委員 그것하고는 무관한 내용인데, 임대주택은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까?

○財務局長 張壽吉 지금 현재 임대주택은 네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네가지 내용은 재원을 출연하는 단체나 기금에 따라서 임대주택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출연해서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했을때에 저희들이 말하는 영구임대주택 그것을 50년으로서 임대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근로자를 위해서 설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으로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내용외에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이 당해 임대주택 임대개시일부터 시작되는 임대주택 이런 것은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임대하는 그런 주택으로서 네가지의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32分 散會)

○出席委員 11人

徐 化 錫	崔 東 煥	金 壽 榮
金 振 權	朴 時 俊	宋 夏 星
申 宗 鉉	安 傑 珞	俞 鎮 武
尹 晚 丸	尹 弘 老	

○缺席委員 2人

崔 桂 洛 高 允 根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宋 鍊

○參席公務員

財 務 局 長	張 壽 吉
財 務 課 長	元 在 雄
賦 課 課 長	高 鎔 銀